

심의결과 위안대호가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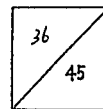
의안번호	회의차수	회의일자	제 의 자
제 40호	제 22차	1988.9.1	홍재 김 건

의 안 "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이율" 개정

의결사항 "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이율"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.

제의관계 법규조항 한국은행법 제7조, 제69조, 제72조

제의취지 금융기관의 수지보전 및 정책금융 취급유인 강화를 위하여 낮은 수준으로 운용되어 온 당행대출금리의 수준을 일부 상향조정하는 한편 금리체계를 합리화 함으로써 금리정책 중심지표로서의 기능을 높이고자 전기와 같이 의결할 것을 제의함



참고사항 제의관계 법규조항 발제

한국은행법 제7조

- ① (생 락)
- ②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이 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통화신용의 운영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명백히 부여된 기타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며 한국은행의 업무, 운영, 관리에 관한 지시감독을 한다.
- ③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규정, 지시를 발할 수 있다.
- ④-⑥ (생 락)

한국은행법 제69조

한국은행은 대한민국내에 있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의 여신업무를 할 수 있다.

1. (생 락)
2. 다음의 증권을 담보로 하는 1년이내의 기한부 대출
- 가. 이 조 제1호에 해당하는 신용증권
- 나. 정부의 채무 또는 정부가 보증한 채무를 표시하는 유가증권
- 다. 한국은행의 채무를 표시하는 유동증권
- 라. (생 락)
3. (생 락)

한국은행법 제72조

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69조에 규정된 여신업무에 관한 이율을 정한다.

② (생 략)

"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이율" 개정(안)

현 형		개 정 (안)		비 고
(신 설)				
구 분	이 율	구 분	이 율	
1. 상업어음제한인	<u>연 7.0%</u>	1. 상업어음제한인	<u>연 8.0%</u>	- 1%p 인상
2. 담 보 대 출		2. 담 보 대 출		
가. 무역어음 담보대출	<u>연 7.0%</u>	가. 무역어음 담보대출	<u>연 8.0%</u>	- 1%p 인상
나 - 라. (생 락)		나 - 라. (현 형 과 같 음)		
마. 군수산업어음 담보대출	<u>연 5.0%</u>	마. 방위산업어음 담보대출	<u>연 8.0%</u>	- 3%p 인상, 자구수정
바. 기타어음등 증권담보대출		바. 기타어음 등 증권담보대출		
'한국은행의 기타어음등 증권담보 대출취급규정' 제2조 제1항에 의한 대출중		'한국은행의 기타어음등 증권담보 대출취급규정' 제2조 제1항에 의한 대출중		
(1) 제1호에 의한 대출	<u>연 6.0%</u>	(1) 제1호에 의한 대출	<u>연 8.0%</u>	- 2%p 인상
(2) 제2호에 의한 대출	<u>연 5.0%</u>	(사 제)		- 경과조치로 흡수
(3) 제3호에 의한 대출	<u>연 8.0%</u>	(사 제)		- 제1호로 이관
(4) 제4호에 의한 대출	<u>연 3.0%</u>	(2) 제2호에 의한 대출	<u>연 3.0%</u>	
(5) 제5호에 의한 대출	<u>연 8.0%</u>	(3) 제3호에 의한 대출	<u>연 8.0%</u>	
(6) 제6호에 의한 대출	<u>연 15.0%</u>	(4) 제4호에 의한 대출	<u>연 15.0%</u>	
3. 금융기관에 대한 특별용자	<u>연 5.0%</u>	(사 제)		- 경과조치로 흡수

현행	개정 (안)	비고
(신 설)	<p>II. 기 타</p> <p>1. 시행일자 : 1988.9.2.</p> <p>2. 경과조치 : ① 이 규정 시행일 전에 금융기관이 다음의 대출을 <u>취급한 경우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이 취급한 대출 에 대하여는 이 규정 2-바(1)의 이율을 적용 한다.</u></p> <p>가. 1981년도 수출상업설비자금대출 나. 1981년도 중소기업특별저리설비자금대출 다. '에너지' 절약시설자금대출 라. 정부의 정책사업지원과 관련된 지원자치단체 에 대한 대출 마. "기타 한국은행총재가 특별히 인정하는 대출" 중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수요자금용 및 서울시 지하절건설자금</p> <p>② 이 규정 시행일 전에 금융기관이 「한국은행의 기타어음 등 증권담보대출 취급규정」에서 정한 "기타 한국은행총재가 특별히 인정하는 대출" (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수요자금용 및 서울시 지하 절건설자금 제외)을 취급한 경우 및 "기업체질감 화대책과 관련한 토지개발채권"을 보유한 경우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이 취급한 대출과 "금융기관에 대한 특별용자"에 대하여는 종전이율을 계속 적용 한다.</p>	